

#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[ 2005. 10. 7 규칙 제92호 ]

일부개정 2013. 11. 8 규칙 제230호  
(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  
일부개정 2019. 12. 26 규칙 제372호  
(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,  
재명개정)  
일부개정 2020. 7. 10 규칙 제384호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9. 12. 26>

제2조(법정 적립액의 산출기준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(이하 “기금”이라 한다)의 매년도 법정 적립액 산출은 증평군의 최근 3년 동안의 「지방세법」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>

제3조(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)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 하여야 한다.  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 12. 26>

제4조(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) 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 
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.

제5조(융자의 조건 등) ① 「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」(이하 “조례”라 한다)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따라 융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9. 12. 26, 2020. 7. 10>

1.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. 다만, 증평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증평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 심의를 거쳐 융

자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2. 이자이율은 연리 3~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,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함. 다만, 기금을 용자 받은 자(이하 “채무자”라 한다)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증평균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 하여야한다.

② 삭제 <2019. 12. 26>

③ 삭제 <2019. 12. 26>

제6조(용자금의 상환) 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용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.

1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를 받았을 경우
2. 용자금을 용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
3. 용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
4. 관계법령 및 용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.

제7조(상환기간의 연장) 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제8조(용자업무의 위탁) ① 군수는 용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용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평균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.

② 증평균 금고로 하여금 용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,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

제9조(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) 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(자연재난 업무팀장)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 11. 8>

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증평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장부의 비치)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·보존하여야 한다.

1.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(별지 제1호서식)
2.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(별지 제2호서식)
3.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(별지 제3호서식)
4. 적립금(증식기금) 관리대장(별지 제4호서식)
5. 적립금(사용비충당금) 관리대장(별지 제5호서식)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지규칙)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「증평군재난관리기금운용·관리조례시행규칙」(규칙 제48호, 2003. 12. 15)은 이를 폐지한다.

부칙(2013. 11. 8 규칙 제230호,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칙의 개정) ① 부터 ⑦ 까지 생략

⑧ 증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·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 중 “자연재난 업무담당”을 “자연재난 업무팀장”으로 한다.

⑨ 부터 ⑳ 까지 생략

부칙(2019. 12. 26 규칙 제372호,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)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7. 10 규칙 제384호)

증평균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







